



PwC 베트남 뉴스레터

내국 수출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

2025년 7월



At a glance

6월 25일, 국회는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내국 수출입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비준했습니다. 이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주요 변경사항

관세법의 개정사항

- 내국 수출입 상품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인도 및 인수되는 상품입니다. 여기에는 매매 계약, 제조계약, 임가공 계약(자재공급의 유형과 무관) 및 임대/대여 계약이 포함됩니다.
- 현재 3자간 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외국 상인이 베트남에 "주재하지 않음"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.
- 개정된 법률은 법률의 시행일 현재 등록되었으나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세관신고 건에도 적용됩니다.

이러한 변화는 법률 측면에서 내국 수출입 거래를 공식화하고 VAT 0%세율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진전을 나타냅니다.

부가가치세법의 개정사항

- 제9조는 VAT 0%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품의 정의를 "내국 수출품"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안은 앞으로 내국 수출품에 대해 VAT 0%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. VAT 0%세율에 이의가 제기된 과거 건의 경우, 추가 점검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.



Contact us

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
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Nguyen Huong Giang

Partner

n.huong.giang@pwc.com



박준형 – 호치민 사무실

Director, Korean CPA

+84 (28) 3823 0796 Ext. 4611

park.junhyung@pwc.com



Richard Irwin

Partner

r.j.irwin@pwc.com



김민걸 – 하노이 사무실

Manager, Korean CPA

+84 (24) 3946 2246 Ext. 1011

kim.mingul@pwc.com



www.pwc.com/vn